

서울 행정법원

2001. 11. 7. 판결선고	인
2001. 11. 7. 원본영수	

제 11 부

판 결

사 건 2001구15619 공장설립변경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콘크리트

경기 포천군 내촌면

대표이사 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허○○

피 고 포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손명숙

변 론 종 결 2001.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1. 2. 7. 원고에 대하여 한 경기 포천군 내촌면 진목리 620, 620-1, 620-2, 621, 622, 825 각 필지 지상 아스콘제조를 위한 공장설립변경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포천군 내촌면 진목리 620 공장용지 1,342㎡, 같은 리 620-1 공장용지 4,928㎡, 같은 리 620-2 공장용지 1,909㎡, 같은 리 621 공장용지 1,164㎡, 같은 리 622 공장용지 1,345㎡, 같은 리 825 공장용지 704㎡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위에 공장용지면적 11,392㎡, 제조시설면적 815.85㎡, 부대시설면적 205.16㎡ 규모의 불룩생산공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2000. 12. 11 피고에게 아스콘제조업을 업종에 추가하고, 공장(기계실, 관리실, 화장실, 혼합재탱크)을 증축하는 내용의 공장변경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는 진목3리 주민의 생활근거지인 주거지역(최단거리 : 45m) 및 농가의 소득원인 농경지(포도 및 벼농사)와 근접되어 있는 지역으로, 대기오염물질(매연, 먼지, 황산물질,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등)이 발생하는 아스콘공장이 가동될 경우에는 당해 (인근)지역의 주거환경 및 자연환경의 피해와 농작물(포도, 벼농사등)의 피해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1. 2. 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및 공장입지기준 고시(1999. 12. 6.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4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갑2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고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에 대하여 고시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증설하려는 공장은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4종),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5종), 소음배출시설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으로서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서 공해공장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의 공장설립변경승인 실무종합심의회 결과 공장설립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한 바 있으며, 피고도 원고의 공장설립변경승인신청이 관계 법령상 적법하다는 점에 이의가 없고, 원고는 공장설립변경승인 이후 아스콘제조공장 신축시 공장부지의 포장 및 진입도로에 대한 관리철저로 인근 마을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이 승인되어 아스콘공장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 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신청경위

(가) 이 사건 공장용지 위에 공장용지면적 11,392㎡, 제조시설(작업장) 면적 815.85㎡, 부대시설(사무실 32㎡, 화장실 18㎡, 경비실 12.96㎡, 사무실 142.2㎡) 면적 205.16㎡ 규모의 콘크리트타일·기와·벽돌 및 블록제조업을 업종으로 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정○○과 함께 2000. 8. 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이○○·○○콘크리트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공장용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공장의 제조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철골조 칼라시트지붕 단층공장 815.85㎡, 부속건물 조립식 패널지붕 단층사무실 18㎡, 시멘트 벽돌조 스테이트지붕 단층 화장실 10㎡, 시멘트 벽돌조 스테이트지붕 단층보일러실 32㎡, 조립식 패널지붕 단층 경비실 12.96㎡, 창고 30㎡, 적사장 112.5㎡, 사무실·식당·기숙사 총 142.2㎡, 샤워장㎡보일러실 총 7.2㎡, 창고 63㎡를 경락받았다.

(나) 원고는 2000. 9. 2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의 상호 및 대표자를 원고 및 장○○으로 변경하는 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00. 12. 11. 피고에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공장의 업종에 아스콘제조업을 추가하고, 공장면적을 증축(기계실 30㎡, 관리실 30㎡, 화장실 30㎡, 혼합재탱크 40㎡)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최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배출시설명세서에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을 기재하면서 보일러에 관하여 “B/C유”는 “63톤/년”을, “경유”는 “587톤/년”을 각 사용하며, “가동일수”는 “연간 90일”이라고 기재하여 신청하였다가, 2000. 12. 26. 신청내용 중 계산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배출시설명세서의 내용 중 보일러에 관하여 “B/C유”는 “63톤/년”을, “경유”는 “400톤/년”을 각 사용하며, “가동일수”는 “계절 및 작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연간 90일 가동”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제출하였다(다만, 원고의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등의 명시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보일러 용량과 연료사용량의 산정근거를 제시하라는 등의 보완요구를 하자, 원고는 2001. 1. 30. 보일러는 사용하지 않고 버너로 대체하며, 버너 용량은 시간당 B/B유 70ℓ를 사용하고, 연간 연료사용량의 산출근거에 대하여는 “B/C유 사용량 : $70\ell/\text{hr} \times 10\text{hr} \times 90\text{Day} \div 1000 = 63\text{톤}$ ”이라는 내용의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첨부한 배출시설명세서에는 “버너”에 관하여 “B/C유”는 63톤/년“을, ”경유“는 400톤/년”을 각 사용하며, “가동일수”는 “계절 및 작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연간 90일 “가동”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공장용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데, 원고의 당초 신청내용에 따른 연간 연료사용량(B/C유 63톤/년, 경유 587톤/년, 가동일수 연간 90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기

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3종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원고의 변경된 신청내용에 따른 연간 연료사용량(B/C유 63톤/년, 경유 400톤/년, 가동일수 연간 90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4종사업장에 해당하게 된다.

(사) 한편, 아스콘공장의 연 조업가능일수는 250일~280일이고, 일 조업가능시간은 8시간~10시간이다(다만, 서울·경인지역에서의 아스콘공장 연 평균가동률은 아스콘 발주량이 증가되지 않은 관계로 31% 정도이다).

(2) 피고의 이 사건 처분 결정 과정

(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관부서인 지역경제과와 관련부서인 환경보호과·도시건축과·건설과·농축산과는 2000. 12. 12. 실무중합심의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당시 도시건축과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므로 폐수배출시설 5종 이하 사업장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4종 이하 사업장 중 특정수질·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하다고 심의하였고, 그 후 환경보호과에서는 2001. 1.경 지역경제과장에게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4종),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5종), 소음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필하였는지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하여 “가”라고 기재하여 지역경제과장에게 통보하였다.

(나) 그런데, 내촌면장은 2001. 1. 31.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공장가동으로 인한 주민의 주거환경 및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종합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스콘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연료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여 인체 및 건물, 농작물 등에 피해 우려가 있고, 골재 등의 원료의 야적 및 운송시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인체 및 건물, 농작물 등에 피해 우려가 있으며,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가동하는 설비(압축기, 변속기, 송풍기)에서 소음·진동이 발생하여 정신적 피해 우려가 있고, 아스콘의 반송 등으로 인한 지정폐기물이 발생되어 주거환경을 오염시켜 수질 및 토양오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우려가 있어 아스콘공장의 설립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다) 피고는 2001. 2. 7.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인근)지역의 주거환경

및 자연환경의 피해와 농작물(포도, 벼농사등)의 피해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고시 제5조 전문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고시 제5조 후문에 정한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등”을 고시한 바는 없다.

(3) 이 사건 공장용지의 주변 환경

(가) 이 사건 공장용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그 서쪽 바로 뒤편으로는 수목이 많이 들어서 있는 임야가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장용지의 북쪽에 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경기 포천군 내촌면 진목리 618-1, 618-2, 619-2, 619-3 각 토지, 바로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같은 리 830 토지, 동쪽 및 동남쪽으로 바로 옆 및 그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같은 리 624, 636-2, 637-1, 637-2, 637-3, 642-3, 643-2, 643-4, 643-8, 671, 672-2, 673-1, 673-3, 679, 750, 751, 752-2, 755-1의 각 토지는 포도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등 이 사건 공장용지의 바로 인근 10여 농가가 7,000평 포도밭에서 포도재배를 하고 있고, 그 밖에 15농가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장용지에 접해있는 경기 포천군 내촌면 진목3리의 죽엽산포도의 재배 면적은 총 23,050평에 달한다.

(다) 이 사건 공장용지의 남쪽 약 45m 떨어진 곳부터 수십 채의 주택이 위치하고 있고, 50여 가구의 경기 포천군 내촌면 진목3리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공장용지의 동쪽 및 동남쪽으로 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구역에 인접한 농업보호구역의 면적까지 합하면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은 345,602㎡에 달한다)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공장용지에서 위 농업진흥구역을 지나면 왕복 4차선 정도의 국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국도에서 경기 포천군 내촌면 진목리 638-2, 637-4, 649-6, 647-5의 각 도로를 통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로 연결되고 있다.

(4) 아스콘공장설치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

(가) “아스콘”이란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일본식으로 줄여서 쓰는 말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공장에서는 아스팔트 시멘트와 혼합재료를 섞어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만든 다음, 운반차량에 적재하여 운송하게 되며, 이는 포장용으로 주로 쓰인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과정에서는 매연, 먼지 등이 발생하고, 특히 다고리방향족 탄화수소(PAH),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유해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데, 유해대기오염물질은 비록 극미량이라 할지라도 독성, 신경장애성, 종양성, 발암성, 태아기형성, 돌연변이성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굴뚝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작업과정 도처에서 방출된다.

(다) 뿐만 아니라,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악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호흡기계, 순환기계, 소화기계, 생식기계, 후각기계 등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부근의 동식물에 여러 가지 생리적인 장애를 일으킨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3호증의 6, 갑5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3, 을1호증 내지 을7호증, 을14호증 내지 을17호증,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1) 공장입지기준고시(1999. 12. 6.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47호)의 법적 성질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에 관한 사항(제4호)’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고시는 제5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호 생략) 2.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고시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보면,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

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입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고시에서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 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고시한 것은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6261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고시의 법적 성질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시 제5조 후문에 규정된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 고시가 행하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 제5조 전문 제2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등”을 고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고시 제5조 전문 제2호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고시 제5조 전문 제2호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공장의 입지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로서는 비록 이 사건 고시 제5조 후문에서 정한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등”을 따로 고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 제5조 전문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되는지 여부

나아가, 이 사건 공장용지에 이 사건 신청과 같은 아스콘공장이 설치됨으로써 이 사건 고시 제5조 전문 제2호와 같이 이 사건 공장용지의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신청의 내용 및 경위(특히 원고가 경유에 대한 연

간 연료사용량을 변경하였던 점), 이 사건 신청에서의 가동일수, 아스콘공장의 연조업가능일수, 이 사건 공장용지의 지리적 위치, 인접 주민거주지 및 포도밭등 농경지와의 거리, 주변 생활 및 자연환경과의 관계, 아스콘 제조과정에서의 환경침해물질발생의 태양 및 정도 등과, 비록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원고가 설치하려는 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상의 4종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지만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41조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B/C유를 70ℓ/hr로 사용하는 것으로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을 계산하면, 1,226.4톤($70\ell \times 24 \text{시간} \times 365\text{일} \times 1/1000 \times 2$)이 되어 경유의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상의 4종사업장이 아님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에 의한 공장의 설치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인 이 사건 공장용지에 설치가 제한되는 토지이용행위에 해당하는 점²⁾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공장용지는 인접 주민거주지 및 포도밭등 농경지와 인접하여 있어 아스콘공장 가동과 그 운송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매연, 진동의 발생, 대기오염물질배출과 그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및 아스콘 운송시 교통혼잡 등으로 인한 환경침해로 이 사건 공장용지의 인근주민의 생활환경과 특히 포도밭등 농경지의 경작 및 생산환경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고시 제5조 전문 제2호에서 적시하는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지

1) 따라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에 의한 공장의 설치가 국토이용관리법령상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사유로 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이유로 하여서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신청이 이 사건 고시 제5조 전문 제2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토이용 관리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가 하나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일일조업시간을 10시간, 연간가동일수를 90일로 하여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을 계산하였으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1조는 그 본문에서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을 계산함에 있어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로 하고, 단서 제2호에서 난방용보일러등 일정시간 또는 일정기간만 가동한다고 시·도지사등이 인정하는 시설 중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설치하고자 하는 공장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1조 단서에서 정한 시·도지사등이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고 신청과 같이 일일조업시간을 10시간, 연간가동일수를 90일로 하여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을 산정할 수는 없다.

않을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1. 7.

재판장 판사 조용호

 판사 김동석

 판사 고흥석

관계 법령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공장입지의 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4.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에 관한 사항

공장입지기준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47호)

제5조(환경오염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2.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준농림지역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이상인 공장·건축물·공작물 기타의 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지법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위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이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중 1종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 중 4종사업장 및 5종사업장 가운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단서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 사업장별 환경관리인의 기준(제33조 제2항 관련)

구분	환경관리인의 기준
1종사업장(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10,000톤 이상인 사업장)	생략
2종사업장(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2,0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인 사업장)	„
3종사업장(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1,0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인 사업장)	„
4종사업장(고체환경연료사용량이 연간 2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1종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

비 고 : 7.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라 함은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사용되는 고체·액체·기체 기타 연료(열원으로 사용되는 원료를 포함한다) 등의 사용량을 무연탄을 기준으로 환산한 양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9조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의 산정방법 등) ①고체환산사용량은 배출시설에서 사용되는 연료(열원으로 사용되는 원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을 배출시설별로 산정한 수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의 연료사용량을 합하여 정하되,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배출시설의 시간당 연료의 사용량 $\times$ 일일조업시간 $\times$ 연간가동일수 $\times$ 고체연료환산계수

제40조 (배출시설의 시간당 연료의 사용량)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시간당 연료의 사용량은 당해 시설의 시간당 최대연료사용량으로 한다.

제41조 (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 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난방용보일러등 일정시간 또는 일정기간만 가동한다고 시·도지사등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이미 설치되어 사용중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

가.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봄

나.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당해 년도의 연간가동일수로 봄

2.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봄

제42조 (고체연료환산계수)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체연료환산계수는 무연탄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며, 그 환산계수는 별표 9와 같다.

(별표 9 중 B/C유 환산계수 2.00, 경유 환산계수 1.92)